##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안내

## 제도 개요 및 근거

- ▶ (제도개요)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관련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
- ▶ (추천업체) 해당 품목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
  - ※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은 2개이상 업체추천,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는 5개이상 업체추천 (단, 추천 신청업체가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)
- ▶ (법적근거)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

**제8조(조합 추천 수의계약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 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항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가목
  - 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5호

## 나라장터 조합추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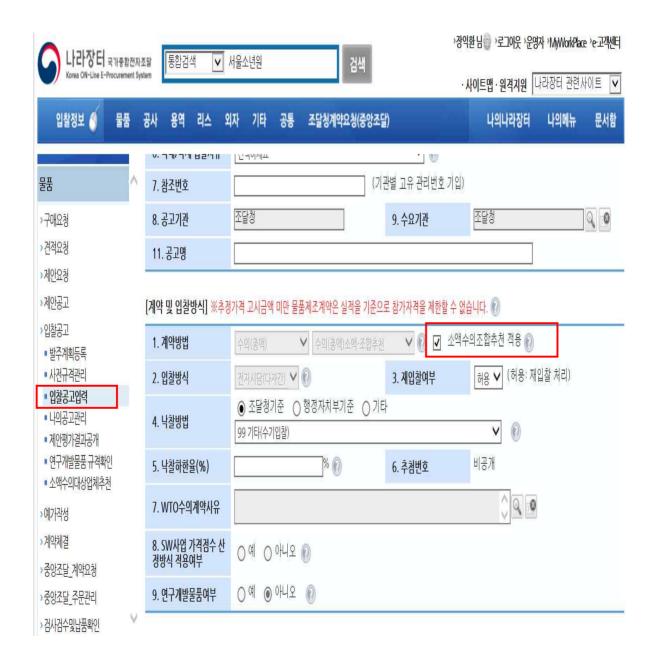
▶ ① 나라장터 로그인 → ②물품 → ③입찰공고 → ④소액수의대상 업체 추천



- ► 검색 : 이전에 요청한 조합추천 대상업체 추천 목록 조회 (추천완료 여부 등 검색)
- ▶ 신규 : 소액수의 대상업체 추천요청서를 입력하여 저장 및 송신

## 나라장터 계약절차

- ▶ ① 나라장터 로그인 → ②물품 → ③입찰공고 입력 → ④소액수의 조합추천 적용 선택
  - \* 업체추천이 완료된 경우 계약절차 진행



▶ 추천된 업체가 자동 반영된 후 견적시담 진행